

대학생활
필수비타민

이것만은
알고가자!!!



GUIDE BOOK

?

과외
알선업체

아르바이트

consumer

불법다단계

credit

TIP!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

대부업체

!

대학생활 필수비타민

이것만은 알고가자!!!

- 4 ... 과외비 떼어먹는 과외알선업체 | 가르치는 대학생 따로, 돈 버는 업체 따로
- 6 ... 물고 따져야 할 아르바이트 | 똑 부러지게 일하고 권리 찾기
- 9 ...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넘기 | 짧은 시간 쉽게 큰 돈 벌 수 있다?
- 13 ... 대부업체 위험성 제대로 알기 | 신용도 급 하락에 신용불량 위험까지
- 16 ...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 요주의 | 사회경험 없는 대학생이 봉?!

등록금 1천 만원 시대,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와
생활에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대학생활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용과 용돈을 마련하면서,
젊음과 용기를 자산으로 적극적인 대학시절을 꾸려나가려는 나!!!
그러나 부족한 경험을 파고드는,
대학생을 노리는 위험한 함정이 의외로 많네요.

서울YMCA는 대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주 겪게 되는 문제 유형 5가지를 모아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북' 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신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대학사회와 대학생들의 대처 역량을 키우는 데
이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서울YMCA

과외비 떼어먹는 과외알선업체

| 가르치는 대학생 따로, 돈 버는 업체 따로



과외알선, 과외중개, 과외연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과외 아르바이트 알선업체들!!**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고 시간 제약이 적어 대학생이 선호하는 과외 아르바이트, 그러나 과외받을 초·중·고 학생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런 상황을 이용해, 과외 아르바이트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과외받을 초·중·고생(학부모)을 소개해주는 온·오프라인 과외알선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 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 학부모들로부터 미리 수개월치의 과외비를 대신 받아 챙긴 후 대학생들에게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고 떼어먹는 업체**, 매달 학부모에게 새로운 과외선생을 소개시켜주며 **알선 수수료만 챙기는 업체** 등 그 수법도 다양하다.

과외알선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과외알선업체들,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나?

전단지(광고)등을 통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 회원을 모집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대학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 어떤 피해사례들이?

첫 과외비의 80%를 수수료로 챙기는 과외알선업체

김 00씨(경영학, 22세)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과외알선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등록할 때, 첫 달 과외비의 8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으나 첫 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 과외를 시작했다. 그러나 과외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과외 받던 학생이 갑자기 과외를 그만 두겠다고 했다. 김 00씨는 첫 달 과외비 30만원 중 24만원을 공제당하고 6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학부모에게 6~12개월 치 과외비를 미리 받아, 전부 떼어먹은 과외알선업체

대학생 이 00씨는 첫 달 과외비의 80%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과외를 알선 받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과외보수를 달라고 요구하니 과외알선업체는 '현재사정이 안 좋아 과외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었다. 학부모는 과외 시작 전에 미리 6개월 치 과외비를 과외알선업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이 업체는 부도처리 되었다.

Tip 과외알선업체 피해예방!!

1. 과외알선업체를 이용해 과외학생을 소개받는 경우, 먼저 과외비를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과외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직접 과외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업체가 미리 6~12개월 치 과외비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전달받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한 달 과외비의 80~100%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과외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서 작성을 요구받는데, 이때 회원가입서 및 기타 계약서 등의 문서 복사본을 요구하고 보관한다.
4. 직업안정법에 따라, 과외알선업체인 경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노동부에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외비 떼어먹는 과외알선업체 | 가르치는 대학생 따로, 돈 버는 업체 따로

과외비 떼어먹는 과외알선업체 | 가르치는 대학생 따로, 돈 버는 업체 따로

묻고 따져야 할 아르바이트

| 똑 부러지게 일하고 권리 찾기



대학시절에 아르바이트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누구나 하는 아르바이트, 그러나 일의 종류도 많고 사람도 다양해서 그런지 자칫하면 몸 고생 마음고생, 주위에 아르바이트 하다 피해 본 친구들도 많아 걱정인데...

서울YMCA 조사결과(2008년),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26%, 근로시간의 초과근무 41%, 임금체불 33%, 언어·신체적 폭행 8%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두자.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권리 찾기의 첫걸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도 법률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사전에 고용주와 협의해 근무시간과 기간, 급여(지급일, 지급방법, 수당), 근무 장소, 업무내용, 휴무일, 휴게시간 등을 정하고 문서로 작성해 둔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아르바이트의 안전장치이고 권리 찾기의 첫걸음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 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없을 경우 서울YMCA 홈페이지)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2009년(1.1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1. 시간급 4,000원, 일급 32,000원 (8시간 기준)이다.
단, 수습 기간(최대 3개월)에는 10%를 공제한 3,6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36,000원(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이 되며, 주 44시간 근무(월 226시간)의 경우는 월급이 904,000원이 된다.
2.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게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4.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5. 자신의 시급 계산(최저임금 미달 여부)방법은 자신의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액(4,000원) 과 비교한다. 단, 부정기적인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수당을 제외

■ 임금, 수당은 어떻게?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어 사용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2.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해당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해당한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근무 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도에 그만 둔 경우에도 일한 기간(일수)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도 유급휴일이?

1. 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돼 있다. 근로계약 상 휴일로 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1.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은?

1.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는다.
2.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산재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3.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

■ 피해를 겪었을 때 연락할 곳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임금 등의 피해발생시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한다.

Tip 임금체불시 대처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하므로 근로감독관이 사건 수사, 사업주 고소 등의 일을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확인원'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해 주는 중요자료이므로 잘 챙겨두자.

■ 이런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만!

1. 하는 일에 비해 보수나 조건이 좋은 경우?!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 직업, 고소득 보장' 등으로 소개하는 곳은 무조건 피한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학원 수강 및 교재 구입을 강요하는 곳이 많다.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교재비를 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좋은 사업' 등으로 포장한 불법 다단계판매도 주위에 흔하다.
2. 개인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모집해 개인정보를 얻고,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대출 및 대출알선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고임금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개인정보 및 중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대출에 필요한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넘기

| 짧은 시간 쉽게 큰 돈 벌 수 있다?



좋은 사업하면서 돈도 빨리 많이 번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랜만에 연락해 온 친구가 '좋은 아르바이트, 투자기회, 병역특례 일자리 소개' 등을 말하며 꼭 한번 같이 가자는데...

대학시절 많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잃게 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경제적 피해, 학원·지연을 이용한 판매원 끌어들이기로 친구관계도 깨지는 등의 후유증!!!
 신용불량자 되는 일 다반사, 불법 다단계 판매 사업에 전념하느라 진로포기, 인생포기!!

서울YMCA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6~7명 중 1명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경험자였다.
 짧은 시간 큰 돈 쉽게 벌 수 있다는 불법 다단계판매!
 그 피해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다단계판매가 도대체 뭐야?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회사가 특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팔거나 그 소비자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특정인과 같은 판매활동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네트워크마케팅(Network Marketing) 혹은 MLM(Multi Level Marketing)이란 용어를 사용해 획기적인 경영 전략인양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하지만 법적명칭은 다단계판매이다.

■ 친구(?)의 달콤한 권유에 속으면 안 돼!!

대학생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를 보면, 가입권유자의 50%가 친구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선후배 순(서울YMCA 시민중계실 상담사례)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가입권유 방법은 좋은 아르바이트, 투자기회, 병역특례 일자리 소개, 좋은 제품 구입기회 등이었으며, 대학생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300만원대 였다. 돈 없는 대학생들이 다단계판매 비용을 마련하기위해 학자금 대출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신용불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Tip 다단계 판매 권유에 대처하는 지혜!! 대학생은 겨냥하는 다단계 판매는 문제업체!

1.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권유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사기성 업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2. 다단계판매회사 중 **대학생을 겨냥한 업체는 대부분 불법업체이거나 등록업체라 할지라도 불법을 일삼는 악덕업체**로 보면 된다. 방문판매사와 다단계판매사의 협의체인 직접판매협회도 '대학생 다단계판매'는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그래도 다단계판매회사가 궁금하면,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규모,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 불만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에 들어가면 다단계판매업체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판매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당을 받았는지와 피해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자로, 신용불량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 권유로 시작한 다단계판매, 수익은 전혀 없어

윤 씨(서초구 방배동, 총 구매금액 520만원)는 2007년 11월 대학 재학 당시 친구가 다단계 판매원을 권유함. 다단계판매사에서 교육 때 6개월 후부터는 한 달에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장함.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함.

학자금 대출명목으로 다단계판매 투자비 마련했으나 신용불량자로 전락

휴학생 김 씨는 초등학교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함. 직급을 유지하고 수당을 받으려면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학자금대출 명목의 대출을 소개해 줌. 대출금 700만원 중 550만원의 물품을 구입. 지불 능력이 없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함.

■ 청약철회 · 취소하려면

1. 단순히 다단계판매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후 14일 이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다단계판매원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도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좋다.
3. 다단계판매 관련 문익과 피해상담은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25-1400/http://consumer.ymca.or.kr/)에 도움을 요청한다.

※ 내용증명 우편과 작성방법 : 18~19페이지 참고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남기 | 짧은 시간 쉽게 큰 돈 벌 수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남기 | 짧은 시간 쉽게 큰 돈 벌 수 있다?

Tip 이젠 수없이 불법 다단계 판매에 걸렸을 때!!

1. 교육·합숙 강요가 첫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탈퇴의사를 확실히 하고 나와야 한다. 쉽게 놓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렵다면 휴대폰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빠져 나온다.
2. 교육·합숙 과정에서 계속되는 현혹에 넘어가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물품대금 혹은 사업비를 쉽게 주면 안 된다. 돈이 없다고 하면 '대출을 소개 해준다고 하므로 여기에 넘어가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3. 제품 구입 후, 물건 개봉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개봉 후 반품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멸실 또는 훼손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체 위험성 제대로 알기

| 신용도 급 하락에 신용불량 위험까지



'신속한 당일대출', '부모 동의 없이 대학생 특별 신용대출' 등을 내세운 고리사채 대부업 광고... 대학 교내외의 전단지, 생활정보지 뿐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휴대폰 대출광고에, 하루 종일 돌아가는 케이블TV 광고, 심지어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객차 안에까지 하루 종일 대학생들의 눈을 잡아두는 대부업체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 '신용유이자'가 1만 명 (2008년 말 12월 기준)을 넘고, 2008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중 대출이 거부된 4만 8천 명 중 2만 8천명이 대학생 자신의 낮은 신용도와 연체 때문인 현실...

원금보다 더 큰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대부업체와 고리사채의 위험!!!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쉬운 대출만큼 위험한 대부업

대학생들도 돈 빌리는 사람 많다. 학자금으로 생활비로,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또 불법 다단계판매에 넘어가 수당과 직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대학생까지...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대학생은 신용도를 매길 수 없어 안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무늬만 학자금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 대부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손쉽게 돈 빌렸다가 고금리 사채 빚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순간이다.

■ 죽음에 이르게 한 대부업의 닷: 300만원이 6700만원의 빚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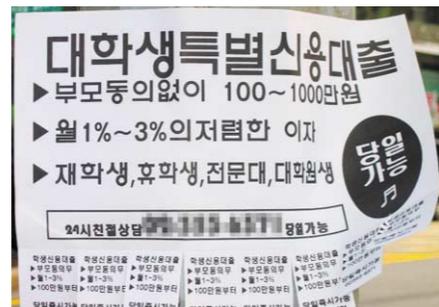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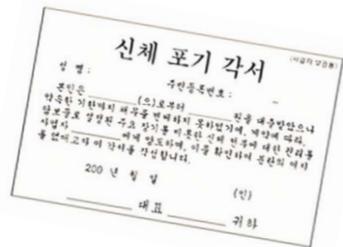
여대생 이 씨(23, 무용과 휴학)는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50만원을 떼고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360만원을 갚는 조건(연이자 345%)이었다.

이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김모씨 일당은 '깎기' 수법으로 이 씨의 빚을 500만원으로 늘린 뒤,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갚게 했다. '깎기'는 채무자가 갚지 못한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서 다시 빌려주는 수법이다. 그때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이자율도 올려서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00만원 빚은 1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었다. 갚을 능력이 없던 이 씨는 사채업자에 의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넘겨졌다. 그러는 사이 빚은 67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견디다 못한 이 씨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버지도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딸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2009. 4 언론보도 내용)

■ 대부업이 도대체 뭐야?

시중은행(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제2금융권)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해 주는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하며, 연 49% 이내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 즉 불법업자는,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대부업체 이용뿐만아니라 조회기록만으로도 신용도가 하락한다!!!

대부업체가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대출 후 연체 없이 갚더라도 기록이 남아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다. 학자금 대출, 일반 금융회사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시 거절사유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신용도(신용등급) : 금융거래 활동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거래(학자금대출 포함), 할부판매 등 일반 상거래 개설, 유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여부, 대출한도, 금리를 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기능을 한다.



대부업체 관련 피해 예방!!

1.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 하다면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측 하단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를 클릭하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2.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1년에 49%를 넘을 수 없다. 수수료 등을 다 합해서 이 비율을 넘을 경우 인하를 요구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낼 의무가 없다.
3. 대부업체 광고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등록번호, 이자율 및 이자 외 추가비용을 꼭 게재하여야 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처벌된다. 대부계약서 주요사항(대부금액·이자율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4. 1년에 이자를 몇 백 %씩 물리는 등록·무등록 악덕업체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모두 처벌 대상이다.
5. 불법채권추심행위인 욕설, 폭력, 협박, 주거침입, 심야전화 등을 하는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으며 처벌대상이다.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 요주의

| 사회경험 없는 대학생이 붐?!



선배 사칭, 무료 사은품,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접근해, 몇 마디하다 보니 어느새 몇 십만원 짜리 어학교재, 각종 자격교재 떠안게 되고... 무심코 받은 전화를 끊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학원 등록이나 교재구입을 강요 당하고...

‘원하지 않았던 물품 강매’는 대학생들의 통과의례?!
 사회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노리는 부당상술의 위험이 도처에 널려있다.
 문제를 알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미리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자!!!

■ 이런 피해사례?

학교추천을 받았다며 걸려온 전화, 30% 할인 유혹에 토익 영어교재 구입해
 어떻게 알았는지 올해 입학한 새내기라는 걸 알고 전화를 해 왔다. ‘TOEIC 교재를 한 달 동안 30% 할인하는데 마감이 임박했고 학교에서도 추천하는 것이라 대부분이 신청했다’고 한다. 구입 후 마음에 안 들면 취소도 가능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얼마 후 교재와 35만원을 납부하라는 대금청구서가 집으로 왔다.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설문조사와 무료선물로 현혹해 다이어트제품 판매
 지하철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화장품을 무료로 준다고 해 작성했다. 화장품이 자동차 안에 있다며 잠깐만 따라 오라하여 갔더니, 차 안에 있던 실장이라는 사람이 ‘살만 좀 빼면 훨씬 예뻐질 것 같다’며 한 달만 먹으면 5kg은 빠진다는 다이어트 제품을 추천했다. ‘학생이라 특별히 싸게 주고 사은품도 많이 챙겨 준다’고 해 결국 구입했다. 가격도 48만원으로 비싸고 앞으로 값을 생각하니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 청약철회제도가 있다는데?

방문판매나 전화 등 판매자의 권유에 따라 계약한 소비자에게 ‘머리를 식혀 냉정하게 다시 생각(cooling off)’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반강제로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정해 조건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일 혹은 물품을 받은 지 14일 이내**의 계약은 이유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 해약통보 방법은 아래를 참조

어떤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 ▶ 판매원이 학교, 가정 등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무점포 판매
- ▶ 설문조사, 사은품 제공을 방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상품 판매
- ▶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등 ‘**소비자가 직접 점포, 상점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한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 사용·소비, 시간의 경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해 놓은 물건은 어떻게 반품하나?

▶ 청약철회 통고를 한후,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자에게 우송할 의무는 없다. 판매자가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분간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다가, 반품 방법이 협의된 이후 착불(수신자 부담)로 판매자에게 우송해 주는 것이 편리하다.

■ 미성년자에게는 계약 취소권이 있다!

민법상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 하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법정 미성년자인지 따져보자. (오늘이 2009년 8월 15일이라면 1989년 8월 16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

■ 내용증명 우편은 무엇? 어떻게 작성하나?

내용증명은 받을 사람(수신인)에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 다. 방문판매 · 전화권유 · 다단계판매 · 할부거래 등 해약요구를 일반우편으로 하면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하거나 반송 · 분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철회의사를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1.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라!

A4 용지에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언제 어떻게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구매계약을 철회한다 등)을 작성 하고, 보내는 사람과 수신인의 주소 · 성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 2부(총 3부)를 함께 창구에 제 출하면 그 중 1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보내는 사람에게도 한부 준다. 이를 보관하면 된다.

2.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 접속 → 우편서비스에서 우편접수 클릭 → 내용증명 클릭 → 내용 증명 신청



※ 청약철회 통고서 작성요령

청약철회 통고서

수신인(회사명, 대표자명과 주소) :
 발신인(계약자명과 주소) :

물 품 명 :
 계 약 일 :
 구입과정 :
 해약사유 : 철회기간 내 ()
 계약서 미교부 ()
 미성년자의 계약 ()
 계약내용의 허위, 과장 및 위약 ()
 기타 ()

계약일, 구입품목, 계약금(기지불액) 및 요구사항을 6하 원칙에 따라
 내용 작성.

 년 월 일
 계약자 (인)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 요주의 | 사회경험 없는 대학생이 몰기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 요주의 | 사회경험 없는 대학생이 몰기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시민의 참여 속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인식 형성, 현명한 신용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캠페인, 모니터링, 정책제안,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www.ycredit.kr
- Tel : 02) 725-1401 ■ Fax : 02) 734 - 3904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시민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민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고 시민·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담 및 피해구제, 법률구조, 조사 모니터링, 제도개선 및 입법 추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직장인·주부·대학생 등 자원활동가들과 변호사·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http://consumer.ymca.or.kr>
- 온라인 상담 <http://consumer.ymca.or.kr>
- 상담전화 : 02) 733-3181 ■ Fax : 02) 733 - 9621

